

의안번호	2202224
의 퇴 인	임호선의원
회 답 일	2024. 8. 29.
추계번호	24C23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의제 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5조의제 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
 - 현재 전국에 20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국가에서 일부 산후조리원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예정)일	설치비 (국비지원)	운영비 (2024년 기준)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2014.2.	8,878	2,633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공공산후조리원	2023.12.	10,100	1,743
울산 북구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2021.7.	9,417 (6,417)	1,939
경기 여주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2019.5.	5,120	1,596
경기 포천시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2023.3.	13,700 (1,900)	1,172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2016.2.	880 (325)	570
강원 철원군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2.	4,640 (797)	1,136
강원 양구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7.	2,640	958
강원 화천군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2022.2.	1,200 (300)	816
충남 홍성군	충남홍성 공공산후조리원	2022.2.	982 (400)	1,063
경북 울진군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11.	600	722
경북 김천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2022.10.	7,517	1,340
경북 상주시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2023.12.	9,195 (900)	300
경남 밀양시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2022.6.	3,000	877
전남 해남군	전남1호 공공산후조리원	2015.9.	964	398
전남 강진군	전남2호 공공산후조리원	2018.5.	1,736 (718)	342
전남 완도군	전남3호 공공산후조리원	2019.6.	1,693	421
전남 나주시	전남4호 공공산후조리원	2020.12.	1,263	585
전남 순천시	전남5호 공공산후조리원	2022.3.	578	138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2013.3.	1,831 (500)	500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가 되는 경우 국비 투입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그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이 신규 설치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신규 설치될 공공산후조리원의 수, 설치 규모, 설치비·운영비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합리적 추계가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